

제24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결과

일시 /장소	○ 일 시: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 장 소: - (서면심의)				작성자	운영지원과 정보공개담당자		
					심의요청부서	OOOOOOOO과		
참석위원	심사위원	직 위	성 명	확 인	심사위원	직 위	성 명	확 인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OOO		위원	외부위원 (교수)	OOO	
	위원	청렴정책 총괄과장	OOO		위원	외부위원 (변호사)	OOO	
	위원	외부위원 (변호사)	OOO		위원	외부위원 (변호사)	OOO	
	위원	외부위원 (교수)	OOO					
심의방식	서면심의							
상정안건	제2026-69호	1. 최초 청구 및 결정사항 ○ 접수번호: 16947422 * 청 구 인 : ○○○(접수일: 2026. 7. 29.) * 청구내용 : 특정 고충민원 사건 관련 조사결과보고서, 검토보고서 등 * 부서 결정사항 : 부분공개(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조사결과보고서, 심의상정자료’ 비공개, 그 외 사항은 공개 또는 정보부존재						
		2. 이의신청 내용 * 이의신청 내용 : 위원 발언 등의 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취지 등 분리가능한 부분의 공개를 요청함						
의견내용		3. 이의신청에 따른 부서 검토의견 * 검토의견: 기각(세부사유 안건자료 참조)						
		[기각] ○ 기각 의견 ○ 주요 의견 내용 - 대법원 2014두43356 판결에 따르면 ‘의사 결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의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음 - 청구인이 신청한 고충민원은 종결되었기에 의사결정과정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비공개한 조사결과보고서 및 심의상정자료는 특정 고충민원 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조사관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 조사하여 이를 정리하고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로서, 고충민원의 처리에 제공된 정보이므로 의사결정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업무담당자 및 고충민원 의결에 참여한 위원들은 자신의 의견 등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가질 수 밖에 없고,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내지는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여 솔직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며 의결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함
결정사항	○ 기각